

2019년도 한국남부발전(주)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

◎ 채용분야 및 인원

(기준 : 명)

구 분		기간제근로자				합계
		고객상담원	장비(차량)담당원	자재관리 보조원	발전소 계획예방정비 현장보조	
근무 지역	부산	4	-	-	-	4
	수도권	-	1	-	-	1
	제주	-	-	1	8	9
합계		4	1	1	8	14

※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I

채용 개요

1. 채용조건

채용분야	근무지	근무시간	모집인원	근무기간	급여수준
고객상담원 (특정업무완성)	부산	4시간/일	4	6개월	月 130만원 수준
장비(차량)담당원 (일시 필요)	수도권	8시간/일	1	6개월	月 230만원 수준
자재관리보조원 (일시 필요)	제주	8시간/일	1	6개월	月 220만원 수준
발전소 계획예방정비 현장보조 (특정업무완성)		8시간/일	8	약 1개월	月 310만원 수준 (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25일 근무기준)

※ 근무기간은 회사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및 변경 가능

2. 지원자격

□ 공통사항

구 분	주요 내용
학력, 연령, 어학	○ 제한 없음
병역	○ 군필 또는 면제자(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)
기타	○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○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: 공고마감일(접수 마감일) 기준

□ 직무분야별 자격사항

직무분야	자격, 우대사항 및 업무내용	
고객상담원 (특정업무완성)	자격	○ 전화 고객상담 업무 유경험자 ○ 부산(본사)지역 출퇴근이 가능한 자
	업무 내용	○ REC계약관련 전화상담업무 ○ 기타 사무보조업무
장비(차량)담당원 (일시 필요)	자격	○ 운전면허 보유자(1종 보통 이상) ○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 소재 회사차량 운전업무 유경험자 ○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(지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) ○ 수도권 지역(신인천발전본부)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
	업무 내용	○ 장비(차량)관리 및 운행
자재관리보조원 (일시 필요)	자격	○ 회사 자재관리업무 1년 이상 유경험자 ○ 남제주발전본부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(공고마감일 기준 현주소 제주지역인자)
	업무 내용	○ 자재창고 관리업무(입출고,검수,야적장 관리 등)
발전소 계획예방정비 현장보조 (특정업무완성)	자격	○ 전기, 기계 관련 교육이력 및 경력 우대 ○ 남제주발전본부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(공고마감일 기준 현주소 제주지역인자)
	업무 내용	○ O/H 직영정비, 현장보조

※ 우대사항은 면접 시 평가요소로 일부 반영

3. 전형방법

단 계	내 용	세부기준	비고
1단계	서류전형	○ 적격심사 : 적부판정 ○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-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	5배수 선발
2단계	면접전형	○ 면접(100점) - NCS기반 경험, 직무능력, 인성 및 조직적합성	1배수 선발
3단계	적부판정	○ 신체검사, 신원조사, 비위면직자 사전조회	최종합격

※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※ 동점자 처리 : 1단계(전원합격) / 2단계(면접평가요소 중 직무능력-조직적합성-인성 고득점 순)

4. 우대사항 적용대상

가산 유형	유형 정의	전형별 가산점	
		서류	면접
등록 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	면제	배점의 10%
취업지원 대상자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○ "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" 기준 ※ '국가유공자(가족) 확인서' 인정 불가	면제	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% 또는 5%

※ 가산점은 10% 한도 내 중복 인정 (단,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 시 10% 초과 가능)

5. 제출서류

※ 서류는 면접전형 시 확인. 최종 제출은 합격예정자 발표 시 안내.

-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-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원본 1부
-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[장비(차량)담당원 필수, 공고마감일 기준 이전 자격증 발급분만 인정]
- 경력증명서 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 원본 1부
[고객상담원, 장비(차량)담당원, 자재관리보조원 : 필수 제출(지원분야 경력 표출내역)]
- 운전경력증명서 (경찰서장 발행, 공고일 이후 발급분, 최근 5년간 내역 표출) 원본 1부
[장비(차량)담당원 필수]
-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II

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

구 분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'19. 4. 9(화) ~ 4. 23(화) 10:00	○ 회사 홈페이지 (https://www.kospo.co.kr)
지원서 접수	'19. 4. 10(수) ~ 4. 23(화) 10:00	○ 채용 홈페이지 (https://kospo.saramin.co.kr)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	4. 24(수)	○ 채용 홈페이지 및 e-mail 통보
면접전형	4월 말~5월 중순	○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※ 직무별 면접일정이 상이하여 개별공지함
최종합격자 발표	5월 중순	○ 채용 홈페이지 및 e-mail 통보

※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

Ⅲ

채용관련 유의사항

- 「인사관리규정,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(해임)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
-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**면접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지참**하여야 하며,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불합격 처리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합니다.
-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
-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)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
- **지원서 작성시** 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**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**하며,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 -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됨
 - 예비합격자는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대상 우선 순위
 -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***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
-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
 - 채용전형관련 문의(평일 14~18시) :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실 ☎ 070-7713-8214, 8218
 -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: 지원시스템 게시판 Q&A

[인사관리규정 제10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 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8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
 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 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 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
 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14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